

기흥5구역 구갈동부 및 기흥7구역 구갈한양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의 행위제한 지형도면 고시

용인시 고시 제2021-138호와 관련하여,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정비예정구역(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84-1번지 및 396번지)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하고자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. 8. 29.

용 인 시 장

1. 제한지역

구역명	단지명	위 치	면 적(m ²)	제한기간
기흥5	구갈동부	기흥구 구갈동 384-1번지	13,638	고시일로부터 3년
기흥7	구갈한양	기흥구 구갈동 396번지	31,608	고시일로부터 3년

※ 단,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경우, 고시일 다음 날 자동해제.

2. 제한사유

-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(예정) 중인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 및 투기행위 유입을 방지하고,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제한 대상 행위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분할

4. 행위제한 지역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, 용인시청 주택정비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합니다.

5. 기타 사항은 용인시 주택정비과(☎031-324-240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